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58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정태호·김종민·한준호

정을호・황명선・강준현

손명수 · 이학영 · 김주영

이정문 · 오세희 · 전현희

강선우 · 서영교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 또는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의 조정,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평가 항목・범위를 결정하게 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 방법과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참여에 관한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또는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외에 기후변화영향평가·건강영향평가평가분야 전문가가 각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1)(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 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 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 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제23 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 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또는 「환경보건법」 제13조에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한다. 민간전문가 외에 기후변화영향 평가 · 건강영향평가평가분야 전문가가 각각 포함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